

◆ 2022 SKN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번호	지표
인권 정책 선언 및 내재화	인권정책 선언 및 고위 경영진의 지지	1	인권 정책(선언문, 헌장, 규정, 행동강령 등)을 수립하였는가
		2	인권 정책을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있는가
		3	고위 경영진이 인권 정책에 대한 강력하고 분명한 지지를 대내외적으로 선언하고 있는가
		4	고위 경영진은 인권정책 수립 및 이행을 관리·감독하고, 이를 이사회에서 정기적으로 논의하는가
		5	고위 경영진이 인권 정책 이행 및 지속적인 개선을 위한 자원을 충분히 배정하고 있는가
	인권 정책 개발	6	인권 정책은 국내외 인권 규범 및 국제기준을 반영하고 있는가
		7	인권 정책은 기업의 핵심가치 및 운영정책과 연계되어 있는가
		8	인권 정책은 내·외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개발하고 있는가
		9	인권 정책에 관한 정보 및 자료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가
		10	인권 정책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작성되어 있는가
		11	인권 정책을 정기적으로 검토하고 필요 시 개정하고 있는가
		12	인권 정책이 고객, 투자자 및 주요 이해관계자의 높은 요구 및 기대사항을 충족하고 있는가
		13	인권 정책을 다양한 언어 및 형태로 제공하고 있는가
		14	인권 정책은 법규 및 산업계의 환경 변화로 인해 새롭게 제기되는 이슈를 정기적으로 반영해 개정하고 있는가
		15	기업의 인권 문제 해결을 넘어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에 기여하기 위한 정책 목표를 담고 있는가
인권 영향평가	16	인권영향평가 시행 시, 절차를 명시하고 문서화하고 있는가	
	17	인권영향평가 시행 시, 역할과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가	
	18	내외 부 정보를 바탕으로 인권 리스크에 관한 사전조사를 실시하는가	
	19	인권영향평가 시, 가능한 모든 분야의 리스크를 다루고 있는가(예: 산업 및 사업장 위치 등)	
	20	인권영향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최소 연 1회)	
	21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우선순위 리스크를 선정하고 있는가	
	22	인권영향평가 시행 전후 절차와 내용에 대해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받고 있는가	
	23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식별된 리스크에 따른 부정적 결과(법, 사업, 재정, 평판 리스크)를 파악하고 있는가	
	24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문서화하고, 인권경영 시스템*에 반영하고 있는가	
	25	인권영향평가의 절차 및 내용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26	고위험군에 대한 별도의 인권영향평가를 수행하고 있는가	
	27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를 기업 의사결정(예: 공급망 관리, 인수합병)에 반영하고 있는가	
인권 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인권경영 시스템 수립	28	인권 정책을 기반으로 한 인권경영 시스템을 수립하고 있는가
		29	인권경영 시스템이 기업 운영 전략 및 프로세스와 연계되어 있는가
		30	고위 경영진이 인권경영 시스템 전반을 관리·감독하고 있는가(설계, 이행, 검토, 평가)
		31	경영 환경 및 리스크를 고려하여 인권경영 시스템을 수립 및 이행하고 있는가
		32	인권경영 시스템은 내외 부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립하고 있는가
		33	인권경영 시스템의 구성, 전담 인력, 이행 현황을 문서화하고 있는가
		34	인권경영 시스템은 내외 부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35	인권경영 시스템이 공급망 및 사업 파트너에게 적용되고 있는가
		36	독립적인 제3자 평가를 통해 인권경영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평가받고 있는가
	자원 배분	37	인권 정책 및 시스템을 관리·운영하는 전담 인력이 배정되어 있는가
		38	인권 리스크 발견 시, 해결대응하기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가
		39	소통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가
		40	고충처리 메커니즘 수립 및 강화를 위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가
		41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 참여를 위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는가
		42	인권 정책 및 시스템 전반에 관한 공시 예산이 배정되어 있는가

◆ 2022 SKN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번호	지표	
인권 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계속)	보건 및 안전	43	기업은 산업, 국가, 국제 기준에 준하는 실질적 보건 및 안전 절차를 시행하고 있는가	
		44	보건 및 안전에 대한 책임을 분명하게 명시하고 있는가	
		45	근로자와 관리자를 대상으로 업무 현장에서의 비상 대비 훈련을 하는가 (예: 구급상자와 소화기가 준비되어 있는가? 비상구의 위치 식별이 쉬우며 접근의 불편함은 없는가?)	
		46	업무 환경은 청결하고 쾌적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기업은 식수, 실내 적정 온도, 환기 및 조명 시설, 적절한 세척과 위생공간을 남녀 모두에게 제공하는가	
		47	특수 근로자(임산부, 장애인 직원, 야간 근로자, 연소자 근로자 등)와 관련한 특수 보건 및 안전 예방 시스템을 마련하고 있는가	
		48	기업은 협력사 직원들에게 보건 및 안전 시스템을 보장해주고 있는가	
		49	기업은 보건 및 안전 근무 사안에 근로자들을 적극적으로 포함하는가	
		50	보건 및 안전 사고에 대한 적절한 보상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	
		개인정보 보호	51	기업은 어떤 개인정보가 수집되어 어디에 저장되며 누가 접근 권한을 가지는지, 왜 이 정보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명시하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가
			52	근로자들은 감시카메라와 인터넷 사용, 이메일 기록 등의 직원 모니터링 현황과 구체적인 목적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가
	53		근로자들은 역량평가, 연봉협상, 승진, 직무전환 및 유사한 고용 결정에 관련된 특정 기밀 정보를 제외한 자신들의 모든 개인정보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가	
	54		기업은 근로자와 특정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전 고용주, 의사 또는 변호사 등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얻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전 서면 동의를 구하는가	
	근로조건 및 임금	55	기업은 주당 40시간의 근무시간을 준수하고, 경우에 따라 국가법, 노동단체 협약, 산업기준에 의거하여 주당 52시간 이하로 제한하고 있는가	
		56	시간외 근무는 최소화하며, 시간외 근무 시 할증수급이 지불되며 주 12시간, 월 36시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가	
		57	기업은 직원 별 근무 시간을 계획, 기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정규 근무시간 내 생산 목표량 대비 충분한 인력 운영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실행하고 있는가	
		58	근로자의 시간외 근무시간이 지속적으로 주 12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외 근무시간을 줄이기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 있는가(예: 근로자 증원 및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59	근로자들은 매주 최소 24시간의 연속적인 휴식시간을 보장받고 있는가(국가법 또는 해당 산업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	
		60	기업은 근로자들에게 매 4시간마다 최소 30분의 휴식시간(국가법 또는 해당산업 기준에 따라 연장 가능)을 보장하며, 근로자들은 지정된 휴식시간 외에도 화장실 사용이 가능한가	
		61	기업의 기본 생활 임금이 기업활동이 이루어지는 해당 국가의 법적 최저임금을 충족하는지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있는가	
		62	시간제 근로자의 임금은 정규직 근로자의 임금과 혜택에 비례하여 적용되며, 시간외 근무 시 정규 수급의 최소 1.25배를 지급하고 있는가	
		63	기업은 국가법에 명시되지 않은 정계사유로 임금을 삭감하지 않는가	
		64	시간외 근무를 제외한 상여금과 성과급 시스템이 있고 이것이 유지되고 있는가	
		65	기업은 유급 병가를 관련 법에 의거하여 보장하며, 국가법에 병가가 명시되어 있지 않을 경우, 노동조합과 상의하여 질병과 부상 시를 대비하여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가	
		66	병가 기간은 근로자의 휴가 기간에서 차감되지 않고 있는가	
		67	시간제 근로자 또는 단기 직원의 경우, 정규직 직원의 근무시간 대비 유급휴가에 비례하여 휴가를 보장받고 있는가	
		68	여성 근로자는 최소 14주의 출산 휴가를 보장받는가 (국내법: 출전전후 90일, 약 12주/다태아일 경우 120일, 16주)	
		69	근로자는 국가법에 의거해 육아 휴직의 권리를 보장받는가	
		70	보육지원 시설을 운영하거나 지원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는가	
	소통 및 교육	71	기업은 모든 직원들이 고용에 앞서 고용 계약서를 받도록 하고, 직원들은 계약내용을 숙지하고 있는가	
		72	계약서에는 명확한 직무 설명과 급여 및 상여 시스템, 적절한 통지 기간을 포함한 직원의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세부적으로 명시하고 있는가	
73		기업은 자사의 기준에 준하는 공식 고용 상태와 운영 방식을 파견업체 근로자들에게 제공하는가		
74		기업은 근로자의 경력 및 자기 개발을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가		
75		모든 임직원을 대상으로 인권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는가 (예: 직장 내 성희롱 인지 및 발생 시 조치 방법에 대한 교육 등)		
76		고위험군 직무 및 지역에서 근무하는 임직원에게 심화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77		채용 및 승진 시, 인권 정책 및 시스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가		
78		주요 행사 또는 특별한 계기에 인권경영의 중요성 및 목표를 강조하고 있는가(예: 조직개편, 신규지침, 자발적 이니셔티브 참여 등)		
79		기업 내 양방향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교육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가		
80		인권 관련 교육자료를 다양한 채널을 통해 공유하고 있는가(예: 이메일, 홈페이지, 뉴스레터, 사보,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		
81		인권교육의 효과성 및 효율성에 대해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및 개선하고 있는가		
82		다양한 언어 및 형태로 교육을 제공하고 있는가 (예: 오프라인, 온라인 교육 등)		
83		사업 파트너를 대상으로 인권 정책 및 시스템을 정기적으로 교육하고, 역량 구축을 지원하는가		

◆ 2022 SKN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번호	지표
제재 및 인센티브	84	인권 정책 위반에 대한 제재 조치 및 징계 규정이 명확한가
	85	위반사항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대응 절차 및 업무에 대한 지침이 있는가
	86	위반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 임직원에게 공개하는가 (익명성 보장)
	87	제재 대상인 임직원 또는 사업 파트너에게 소명 기회 및 절차를 보장하는가
	88	인센티브 제도에는 금전적/비금전적 인센티브가 모두 포함되어 있는가
	89	객관적이고 명확한 인센티브 평가 기준이 공유되고 있는가
	90	인센티브가 남용되지 않도록 적절히 통제되고 있는가
	91	인권 딜레마를 다루기 위한 혁신적인 접근법을 개발했을 경우 인센티브가 있는가
	지역사회 영향력	92
93		부동산의 과거 사용 용도와 이전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조사하여 해당 토지가 과거에 부당하게 몰수된 경우가 아니며 국제법에 따라 적절한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하는가
94		해당 부동산 거래와 관련해 사용자 및 소유주(여성, 거주자, 소수 및 다른 취약 집단)와 상의하며, 부동산 인수 이전에 그들에게 의사결정에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가
95		해당 부동산 거래에 의해 영향 받는 소유주 및 사용자들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며, 그 보상 기준은 투명하고 일관되게 모든 지역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적용되는가
96		부동산의 임대 및 매매로 인해 해당 지역 사람들에게 주거 공간 및 식량 부족으로 인한 피해를 주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가
97		기업 보안 위험 평가는 민간 및 공공 안전요원에 의한 인권침해 항목을 포함하고 있는가
98		민간보안 회사와 체결하는 계약 조항에는 보안담당자의 불법 또는 불건전 행위에 대한 조사 및 규율이 포함되어 있으며, 민간 보안 회사의 부당행위 적발 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가
99		보안 담당자의 임무를 규정하는 매뉴얼이 있으며, 모든 보안 담당자는 법의 적용과 실행을 위한 국제 인권 기준에 준하는 행동 규칙에 대한 교육을 받는가
100		보안 인력 배치의 비율, 지역사회에의 영향, 해당 지역의 갈등 상황에 대응, 보안 관련 사건 기록, 보안 담당자에 의한 인권 침해 의혹 등을 포함하는 보안 조치들을 모니터링 및 평가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101		자원 및 생활터전 접근에 있어 작업 과정 전반에 걸쳐 부정적 영향(예방과 완화)을 미칠 수 있는 해당 지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는가
102	사업활동을 통해 자원과 생활터전에 미치는 모든 부정적 영향과 관련된 법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치를 취하는가	
정부 협력 및 공동 노력	103	인권경영을 위해 정부, 국제기구, 시민사회 등과 협력하고 있는가
	104	고위험 산업 및 지역의 인권 리스크에 대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논의하고 있는가
	105	인권 관련 이니셔티브 및 협력 파트너십에 참여하고 있는가(예: 유엔글로벌콤팩트 참여 등)
	106	인권 리스크 완화를 위해 동종산업 및 이해관계자와 사례 공유와 역량구축을 지원하는가
	107	인권 친화적인 비즈니스 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및 대응 방안 마련을 위해 정부 및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는가
결사의 자유	108	기업은 직원이 독립적 노동조합을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 결사의 자유 단체교섭권 권리를 인정하는 노력을 하고, 이러한 내용을 모든 근로자들에게 분명히 전달하는가
	109	기업은 단체교섭을 목적으로 한 노동조합을 인정하고, 공식적인 근로자 대표가 사업장 이슈와 관련해 단체교섭을 할 수 있는 적합한 절차를 가지고 있는가
	110	기업은 근로자 대표가 업무 수행을 위해 단체교섭 합의 내용, 사업장 및 직원, 그리고 다른 관련 문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가
	111	기업은 근로자 대표 또는 합법적인 노동조합 활동 참여 여부에 따라 직원들을 차별하는 불합리한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가
강제 노동	112	기업 경영진은 업무와 관련된 문제 또는 직원들의 고충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근로자 대표를 정기적으로 만나는가
	113	근로자는 적정기간 안에 사직 의사를 통지하고 퇴사 할 수 있으며, 기업은 이 사항을 고용하기에 앞서 근로자에게 알려주는가
	114	기업(또는 파견 업체)은 임금 및 상여금을 체불하지 않고, 정기적으로 지급하는가
아동노동	115	근로자의 초과 근무에 대한 수당은 지급되어야 하고, 초과 근무는 자발적이어야 하며 감봉, 계약 종결 또는 다른 제재 등의 형벌을 통해 강요되지 않고 있는가
	116	만 18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고용하는 경우, 기업은 미성년자가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는 직무 목록을 가지고 있는가
	117	기업의 견습 프로그램은 해당 기업 노동력의 대부분을 차지하지 않으며, 기간이 제한적이고, 학교의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하며, 연소근로자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는가

인권 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계속)

◆ 2022 SKN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항목		번호	지표
인권 경영 시스템 수립 및 이행 (계속)	차별금지	118	채용공고는 인종, 성별, 나이 등의 차별적 기준을 나타내지 않고 있는가(소수집단 우대정책 제외)
		119	기업은 지원자에게 결혼 상태, 임신, 자녀계획, 부양가족 수 또는 차별적인 채용 결정을 내릴 만한 유사한 정보를 요구하지 않는가
		120	기업은 근로자들이 차별과 관련하여 제재 없이 문제를 보고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모든 근로자들에게 접근이 용이한가
		121	기업은 장애 또는 건강 이상이 있는 지원자가 고용기회를 가질 수 있는 책임 있는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가 (예: 휠체어 접근 용이성, 유연한 작업시간, 적절한 휴식시간 등)
		122	기업은 모든 직원(특히 채용담당자)들에게 차별 금지 및 다양성 존중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에 대한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는가
	전염성 질환에 대한 조치	123	기업은 코로나19와 같은 전염성 질환 등 보건안전이 위협받는 비상사태로부터 직원 및 이해관계자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있는가
		124	기업은 정부의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사업장 내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가
		125	기저질환, 자녀돌봄, 임신 등으로 재난(코로나19 등) 대응에 취약한 직원 및 감염이 된 직원들을 배려한 인사 복무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가
		126	기업은 바이러스 감염자에 대한 낙인, 차별을 금지하며, 혐오발언 등 감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가
		127	기업은 백신 접종에 있어 개인의 선택을 존중하며 미접종을 이유로 차별 및 불평등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가
모니터링 및 공시	성과 모니터링	128	인권경영 시스템의 성과 및 효과성을 모니터링 하고 있는가
		129	고위 경영진이 인권경영 시스템을 모니터링하고 개선 및 조치를 취하는가
		130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시, 외부 전문가, 실제적감 재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의 피드백을 받는 프로세스를 갖추고 있는가
		131	모니터링 시, 구체적인 정량 지표를 사용하고 정성적 데이터를 고려하는가
		132	모니터링 절차에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를 참여시키는가
		133	중대한 인권 이슈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근본 원인에 대한 심층 분석을 실시하는가
		134	모니터링 결과를 직원 및 부서, 고위경영진의 성과평가에 반영하는가
	135	현지 사업장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는가	
	이해관계자 공시	136	사업 파트너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평가 결과에 따라 모니터링의 범위, 빈도, 시행 방식을 결정하는가
		137	모니터링 결과를 문서화하고, 이사회 및 고위 경영진에게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비즈니스 의사결정에 반영하는가
		138	고위 경영진의 지지 및 선언을 공시하고 있는가
		139	인권 정책사 스템 및 이행 현황과 개선 계획을 공시하고 있는가
		140	인권영향평가 결과 및 개선조치를 공시하고 있는가
		141	인권 정책에 대한 소통 및 교육 사항을 공시하고 있는가
		142	제재 및 인센티브 사항에 대해 공시하고 있는가
		143	사업 파트너의 인권 정책 및 시스템 적용 결과를 공시하고 있는가(공급망 관리)
		144	정부 및 이해관계자 협력사항을 공시하고 있는가
145		인권경영 성과 모니터링 및 평가 결과를 공시하고 있는가	
146	고충처리 메커니즘과 결과를 공시하고 있는가(익명성 보장)		
147	다양한 언어 및 형태로 공시하고 있는가		
고충처리 메커니즘	148	임직원 및 실제적감 재적 이해당사자의 고충을 접수 및 처리하기 위한 고충처리 메커니즘이 마련되어 있는가	
	149	고충처리 메커니즘 수립 시, 핵심 부서 및 리스크가 높은 부서의 담당자가 참여하는가	
	150	고충 제기에 대한 진행 절차 및 기간, 접수 결과 등의 정보를 명확하게 제공하고 있는가	
	151	익명성 보장 및 보복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였는가	
	152	취약그룹의 특성을 고려해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수립하였는가	
	153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가	
	154	고충처리 메커니즘에 대한 내외 부 이해관계자 및 독립적인 외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기적으로 개선하고 있는가	
	155	협력사가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독려하고 있는가	
	156	고충처리 메커니즘을 다양한 언어 및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가	